

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0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0. 20. 강명숙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: 2020. 10. 20.
- 다. 상정일자: 제24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10.2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강명숙 의원】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기부증서의 발급 및 기부자 예우(안 제5조 및 제6조)

-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7조 및 제8조)
-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, 위원장의 직무 등
(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)
- 회의, 의견청취 등(안 제12조 및 제13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총 14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목적, 정의, 적용범위에 대한 내용임.
 - (안 제6조)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내용임.
 - 특정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·보존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
 - 구청장 표창장·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
 -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,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명단 공지 등
 - (안 제8조)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,

마포구와 연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,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에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한 기부자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기본적인 수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계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 기부자 등을 포함한 개인이나 단체를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자의 자존감 부여, 기부문화 확산,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함으로써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